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39
----------	------

제안연월일 : 2021. 9. 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5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개정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자연경관지구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 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

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사전승인이 필요한 구청장 출석·발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삭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0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 종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 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를 “(이 항 제3호에 한함)”으로,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식견이 풍부한 자의”를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64조제2항제4호 중 “심사 및 자문”을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
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③ ~ ⑧ (생략)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

2. -----

-----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

-----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

〈삭제〉

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60조(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신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 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후단 신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

----- .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가. ~ 마. (생략)

<신설>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위원회

4. -----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
과의 사무

제65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
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삭제>

<삭제>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